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3800
----------	-------

제안연월일 : 2018. 5.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9월 28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7년 12월 13일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18.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2018년 2월 5일 김삼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2월 22일 신보라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3월 7일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8년 4월 13일 박성

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바로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부칙 제2조).
- 나.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 ③ (생략)</p> <p>④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u></p> <p>1. <u>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u></p> <p>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u>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u></p> <p>3. <u>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u></p>	<p>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u></p> <p>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u>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u></p> <p>2. <u>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u></p> <p>3. <u>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u></p>

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
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
당하는 부분

<신 설>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
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
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제28조(벌칙) ①·② (생략)

<신설>

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